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

2024년 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3. 4.(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30대(1인 1대 지원)
- 총사업비 : 30,000천원 (도비 30%, 시비 70%)
- 지원금액 : 100만원/대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별도)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
 - (개인)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순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두고 거주한 자
 - (기업·법인) 순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
 - ※ 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대표자 주소가 순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순천시 소재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 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 받은 경우에 한함

-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순천시로 되어 있는 자
 - 설치예정 장소에 정부 및 순천시에서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내역이 없는 경우
 - 충전기 지원 신청 전,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동의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환경부 지정 충전기 제조사 중 선택 후 직접 계약(1인 1대 지원)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록된 제조사
- 보조사업자(신청인) 본인 방문접수 원칙 *제조·판매사 대리 접수 불가

○ 대상자 선정방법: 현장 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시 신청 접수 순번 부여

○ 보조금 지원 충전기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OCPP1.6 인증을 거친 제품 또는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에 한함
- ※ OCPP1.6 인증을 받은 동종의 충전기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명칭 정의 >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충전기”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완속충전기”는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이 7kW이상 40kW미만인 충전기
- “비공용 충전기”란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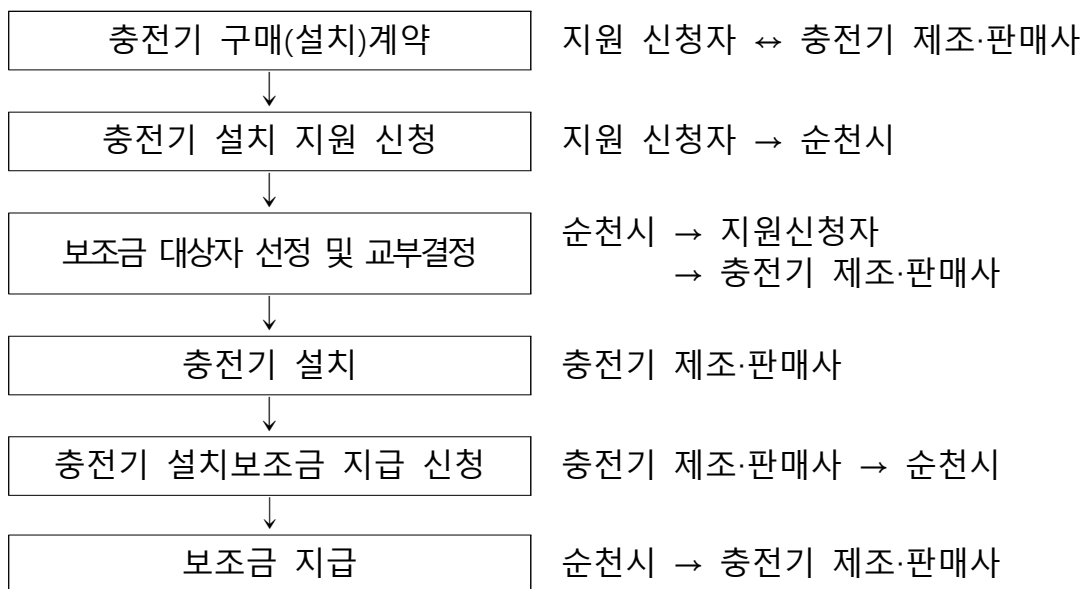
2

지원기준 및 단가

- 지원기준: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지원단가: 100만원/대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지원금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지원 신청자가 부담
 - ※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 ※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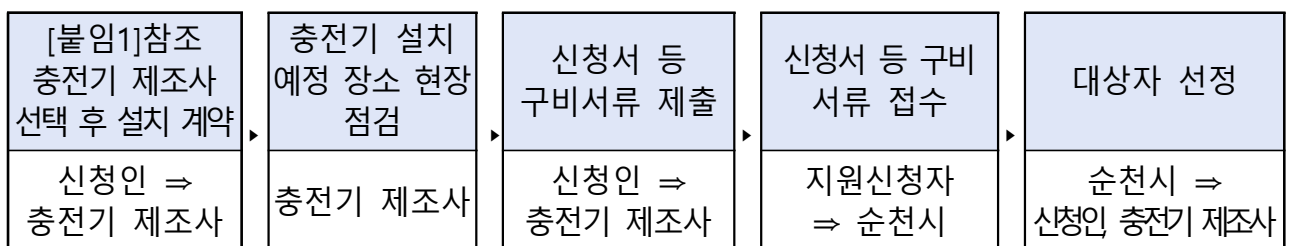
보조사업 추진 절차



4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4.(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분	지원 신청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개인	법인 등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서류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공통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②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서식2) ③ 현장 점검 확인서(서식3)- 설치업체 작성 ④ 충전기 설치계약서(충전기 제조판매사 서식) -제품가격설치비 등 구체적 계약금액 작성 ⑤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⑥ 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⑦ 위임장(서식4) ⑧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서식5) (충전기 설치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 승낙서에 인감 날인 시)설치장소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 승낙서에 서명 시)설치장소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신청자: 보조사업자(신청인) *제조·판매사 대리 신청 불가

나. 접수방법: 순천시청 기후에너지과 현장 접수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시간 외 전달·도착된 서류는 접수불가

다.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현장 접수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시 신청 접수 순번 부여

라. 결과통보: 완속충전기 설치 참여업체 메일 및 개인별 우편 통지

5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시
- 충전기 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사업수행기관)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순천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구 분	지급 신청 서류
제출서류 (청구시)	①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6) ② 보조금 위임장(서식7) ③ 보조금 정산서(서식8) ④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완료확인서(서식9)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⑥ 하자보증증권 ⑦ 세금계산서 ⑧ 완속 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⑨ 참여기업(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보조금 수령용 참여기업(제조·판매사) 통장 사본 ⑪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6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가. 사후관리 및 의무 사용

-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 충전기 소유자가 이전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충전기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이 인수받아 공용으로 활용

-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시군은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나.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 충전기 설치 장소는 순천시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 이어야 합니다.
- 개인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 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 할 경우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합니다. (단,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다. 완속충전기 설치방법

- 사업수행기업은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기업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순천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기업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충전기 국가지원 사업 및 한전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순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사업수행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순천시는 개입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사업수행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수행기업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에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 완료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서 제출 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1]서식 활용)
-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순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지침」 및 순천시 기후에너지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7

기타 전기차 충전기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락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보급사업 관련 종합상담	(통합콜센터) 1661-0970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운영/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	(통합콜센터) 1661-9408
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관련 고객 상담	(통합콜센터) 1899-2100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etc.kepco.co.kr)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061)749-6527

8

붙임 및 서식

- [붙임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 [서식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위임장
- [서식 5]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 [서식 6]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서식 7] 보조금 위임장
- [서식 8] 보조금 정산서
- [서식 9]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완료 확인서
- [서식 10]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별지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 [별지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붙임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업체명	콜센터	업체명	콜센터
대영채비(주)	1522-2573	보타리에너지(주)	064-747-8826
(유)성민기업	1800-8468	(주)스타코프	02-2118-1100
신세계아이앤씨	1899-7495	(주)씨어스	1552-2640
아이마켓코리아	02-3708-5678	(주)에버온	1661-7766
(주)매니지온	1833-2377	유니이브이	1577-8497
이브이시스(주)	031-960-6800	(주)이지차저	1544-3332
(주)이앤에이치에너지	043-260-1123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670-2690
(주)리카플러그	031-778-6181	GS차지비	1600-4047
(주)클린일렉스	02-1811-1350	(주)타디스테그놀로지	02-6941-0609
(주)투이스이브이씨	1577-5918	(주)파워큐브코리아	1833-8017
(주)펄프킨	031-591-6633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	1877-6546
한화솔루션	1533-3464	현대엔지니어링	1833-8777
홈서비스	1670-0119	(주)휴맥스이브이	1800-3188
SK일렉링크	1566-1704	LG유플러스	1855-1078
SK에너지	1599-0051		

* 출처)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는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8. 현장 확인 사진

(뒷면)

▼ 전경(전체) 사진

▼ 설치장소 예정지 사진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성 명 (기관명)	(인)인감도장/서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업체명/대표자	(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인 (위임하는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일반 061)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설치장소	소유자		연락처	일반 휴대폰		
	소재지					
충전기 제조·판매사 (위임받는자)	주소					
	성명 (대표자)		연락처	일반 휴대폰		
	보조금 입금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요청금액		금 원				
<p>위와 같이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감도장</p>						
<p>순천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⑥ 하자보증증권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세금계산서 ⑧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⑪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⑥ 하자보증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세금계산서 ⑧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⑪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⑥ 하자보증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세금계산서 ⑧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⑪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식 7]

보 조 금 위 임 장

□ 사업비 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보조금 청구액 (원)
		계	보 조	자 담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본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신청인/ ※ 위임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주 소:
- 성 명(기관명):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참여기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024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사업 내역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위와 같이 2024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정산 구비서류

- 보조사업 대상자(신청인)
 - 자부담 납부 증빙 자(통장 사본 등)
-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입금계좌 발급증, 입금표(자부담),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4년 월 일

정산자(신청인) 주 소: _____
 성 명(기관명): _____ (인)인감도장

정산확인자 직 명: _____
 성 명: _____ (인)

순 천 시 장 귀하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장소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비공용 충전기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과금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비
	기	기	기
충전기 종류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설치용량: kw		
▼ 전경(전체) 사진		▼ 충전기 설치 사진	
2024년도 비공용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전기 제조·판매사:		(직인)	
순 천 시 장 귀하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순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 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7.26.>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그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주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도 ○○시 ○○로 1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범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1. 포기자

- 성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연락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보조금액(원)	신청 충전기종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원	
포기 사유		

3. 참고사항

- 중도 포기자는 2년 이내 동일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 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순천시장 귀하